

군포도시공사 제8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회계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김 상



2022년 11월 30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00 호

군포도시공사 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(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) 중 “법인세법에”를 “법인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에서”로 한다.

제51조(두서금액의 표시) 중 “한글 또는 한자를 사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“₩”기호를 명기한다.”을 “아라비아 숫자로 쓰되,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52조(회계문서의 날인) 중 “모든 날인은 무인 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없다. 다만,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자서는 기명날인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.”을 “날인은 본인의 무인, 서명, 전자서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86조(선급금지급의 범위) 중 “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.”을 “선급금의 지급범위는 지방회계법을 준용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삭제한다.

제87조(개산금지급의 범위) 중 “개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.”을 “개산금의 지급범위는 지방회계법을 준용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한다.

제139조(유형고정자산의 범위) 제6호 중 “내용연수 5년 이상, 취득가액 30만원”을 “내용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, 취득가액 100만원”로 한다.

제142조(고정자산의 범위 및 관리위임) 제1항 중 “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이상이고”를 “자산의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이고”로 한다.

제186조(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기준) 제1항제1호 중 “취득원가의 내용연수가 5년 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의 30만원”을 “내용연수가 5년 미만이고, 품목별 개별 취득원가가 100만원”로 변경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인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”을 “법인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에서”로 변경하고, 같은 조 제2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품목별 개별 취득원가가 100만원 이상인 공구, 기구 및 비품구입비 지출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지 원 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지 원 부 장 강 승 구
	직 위 성 명	재 무 회 계 팀 장 최 중 환
	담당자 성명 (전 화)	이 영 윤 (3 9 0 - 7 6 1 9)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1조(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)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<u>법인세법</u> <u>에</u>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한다.</p>	<p>제31조(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) ----- ----- <u>법인세법 및 기업</u> <u>회계기준에서</u> -----.</p>
<p>제51조(두서금액의 표시)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 금액은 <u>한글 또는 한자를 사용하고 아</u> <u>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때에는 그 두서</u> <u>에 “₩”기호를 명기한다.</u></p>	<p>제51조(두서금액의 표시) ----- ----- <u>아라비아 숫자로 쓰되, 숫자</u> <u>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기재</u> <u>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52조(회계문서의 날인) <u>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또</u> <u>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없다. 다만,</u> <u>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</u> <u>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자서는 기명</u> <u>날인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52조(회계문서의 날인) ----- <u>날인은 본인의 무인,</u> <u>서명, 전자서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86조(선급금지급의 범위) <u>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.</u> <u>1. ~ 11. (생략)</u></p>	<p>제86조(선급금지급의 범위) <u>선급금의 지급범위는 지방회계법을</u> <u>준용한다.</u> <u>1. ~ 11. (삭제)</u></p>
<p>제87조(개산금지급의 범위) <u>개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</u> <u>같다.</u> <u>1. ~ 3. (생략)</u></p>	<p>제87조(개산금지급의 범위) <u>개산금의 지급범위는 지방회계법을</u> <u>준용한다.</u> <u>1. ~ 3. (삭제)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9조(유형고정자산의 범위) 유형고정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 1. ~ 5. (생 략) 6. 공기구 및 비품 : <u>내용연수 5년이상, 취득가액 30만원</u> 이상의 자산으로 한다. 7. (생 략)</p>	<p>제139조(유형고정자산의 범위) (현행과 같음)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: <u>내용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, 취득가액 100만원</u> -----. 7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2조(고정자산의 범위 및 관리위임) ① 고정자산은 다음 각 호에 계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산의 취득가액이 <u>30만원</u> 이상이고 내용연수 5년 이상인 자산으로 한다. 1. ~ 3. (생 략) ② (생 략)</p>	<p>제142조(고정자산의 범위 및 관리위임) ① ----- ----- <u>100만원</u> 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86조(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기준) ① (생 략) 1. <u>취득원가의 내용연수가 5년 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의 30만원 미만의 지출</u> 2. ~ 4. (생 략) ② (생 략) 1. ~ 4. (생 략) 5. (신 설)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<u>법인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</u>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	<p>제186조(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1. <u>내용연수가 5년 미만이고, 품목별 개별 취득원가가 100만원</u> -----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내용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품목별 개별 취득원가가 100만원 이상인 공구, 기구 및 비품구입비 지출</u> ③ ----- ----- ---- <u>법인세법 및 기업회계기준</u> 에서 -----.</p>